



정 보 공 개 서

(주)자라다교육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제 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자라다교육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14032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4/04/1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6/25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24, 티2-909호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31)907-6640		
전화번호	031)907-6640	FAX	031)906-3334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 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주)자라다교육	자라다 남아미술학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24, 티2-909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5.12.04	2015.12.04	최민준	031)907-6640	031)906-3334
	법인등록번호	285011-0311154	사업자등록번호	897-88-0030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최민준/ (주)자라다교육	자라다 남아미술학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24, 티2-909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민준	031)907-6640	031)906-333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사	홍진영/ (주)자라다교육	자라다 남아미술학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24, 티2-909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민준	031)907-6640	031)906-333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설명
명 칭	자라다남아미술학원	-
상 호	자라다남아미술학원 00점	해당 지역 광역시/동을 기준으로 명칭 사용
상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259121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977,626	501,128	476,497	3,049,260	381,102	405,846
2022년	1,414,285	808,410	605,874	3,722,633	134,648	129,377
2023년	1,626,160	839,814	786,346	4,741,119	200,021	180,471

◆ [별지4] 참조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1) 재무상황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최민준	사내이사	2015.12.04.~현재	(주)자라다교육 대표이사	가맹사업 총괄
			2015.12.04.~2021.08.24	(주)아들연구소 사내이사	
			2010.08.20.~현재	자라다 남아미술연구소 대표	
가맹사업 비관련임원	홍진영	감사	2019.12.06~현재	(주)자라다교육 감사	가맹점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 12. 31.	2	-	19

*당사는 반기신고 원천징수의무자로 7월 말 임직원 수를 기재하였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이력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자라다 남아미술학원 (상표권)		2013.05.16	41-0259121	최민준	2033.05.16

- ◆ 당사는 상표권자 최민준과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3.05.16.~ 2033.05.16.)
- ◆ 당사의 권리 내용은 제 41류인 미술학원경영업에 사용할 수있는 상표권입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자라다남아미술학원] 가맹사업 현황

1. [자라다남아미술학원]의 가맹사업 시작한 날 : 2010년 08월 20일

2. [자라다남아미술학원]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라다 남아미술교육 연구협회	자라다 남아미술학원	최민준	2010.08.20. ~ 2015.12.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123, 3층 302호
(주)자라다교육	자라다 남아미술학원	최민준	2015.12.15. ~ 2017.07.0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23, 3층 302호
(주)자라다교육	자라다 남아미술학원	최민준	2017.07.05. ~ 2021.06.3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4, 802호
(주)자라다교육	자라다 남아미술학원	최민준	2021.07.01. ~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24, 티2-909호

◆ 당사는 2015년 12월15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양수도 전환함

3. [자라다남아미술학원] 업종

영업표지	업종	
자라다남아미술학원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교육	미술교육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자라다남아미술학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9	36	3	52	49	3	56	52	4
서울	10	10	-	16	16	-	17	16	1
부산	2	2	-	2	2	-	2	2	-
대구	-	-	-	-	-	-	1	1	-
인천	1	1	-	2	2	-	2	2	-
광주	2	2	-	2	2	-	2	2	-
대전	1	1	-	1	1	-	1	1	-
울산	-	-	-	-	-	-	-	-	-
세종	1	1	-	1	1	-	1	1	-
경기	16	13	3	22	19	3	24	21	3
강원	0	1	-	1	1	-	1	1	-
충북	1	1	-	1	1	-	1	1	-
충남	1	1	-	1	1	-	1	1	-
전북	1	1	-	1	1	-	1	1	-
전남	-	-	-	-	-	-	-	-	-
경북	1	1	-	1	1	-	1	1	-
경남	-	-	-	-	-	-	-	-	-
제주	1	1	-	1	1	-	1	1	-

◆ 당사는 가맹점 오픈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최근 3년간 [자라다남아미술학원]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29	7	-	-	-	36
2022	36	13	-	-	-	49
2023	49	4	-	1	-	52

◆ 당사는 가맹점 오픈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6. [자라다남아미술학원]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자라다남아미술학원]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도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산출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52	309,081	6,731	613,839	14,910	84,950	1,327	50곳 산정
서울	16	303,836	6,799	552,536	14,910	154,199	2,731	16곳 산정
부산	2	해당없음(5개 미만)						-
대구	1	-	-	-	-	-	-	-
인천	2	해당없음(5개 미만)						-
광주	2	해당없음(5개 미만)						-
대전	1	해당없음(5개 미만)						-
울산	-	-	-	-	-	-	-	-
세종	1	해당없음(5개 미만)						-
경기	21	347,371	7,895	613,839	10,785	86,400	3,600	19곳 산정
강원	1	해당없음(5개 미만)						-
충북	1	해당없음(5개 미만)						-
충남	1	해당없음(5개 미만)						-
전북	1	해당없음(5개 미만)						-
전남	-	-	-	-	-	-	-	-
경북	1	해당없음(5개 미만)						-
경남	-	-	-	-	-	-	-	-
제주	1	해당없음(5개 미만)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평균매출액은 가맹점별 PO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기재하였고, 실제 영업개월 수 6개월 미만 매장은 가맹점사업자 간평균매출액 산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당사는 가맹점 오픈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8. [자라다남아미술학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자라다남아미술학원]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일)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52개	약 1,764일

◆ 당사는 가맹점 오픈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VAT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34,368	(비공개)	-	
광고	소계	(비공개)	34,368	(비공개)	-	
	TV	해당없음	-	-	-	
	라디오	해당없음	-	-	-	
	인터넷	해당없음	-	-	-	
판촉	소계	해당없음	-	-	-	
	1월 행사	해당없음	-	-	-	
	추석 행사	해당없음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일산마두지점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05	031)906-5704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기업은행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방법은 가까운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시어 작성한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시거나, 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접속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자세한 예치방법은 기업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전화(1588-25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예치가맹금은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자라다남아미술학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	-	-
기타 비용(초도 물품비 등)	가맹본부	예치하지않음	확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 계	18,700	-	-	-	(예외조건)
가입비	7,700	가맹 계약 시	영업 개시 이전 계약 해지	오픈 전 해지 시 가맹비 10% 위약금	-
교육비	5,500		가맹 계약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변심으로 인한 교육 중도 포기 시 반환하지 않음	-
인큐베이팅비	5,500		영업 개시 이전 계약 해지	영업 개시 후 반환 불가	-

◆ 만일 귀하께서 가맹본부의 가맹금 산정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 등에 의문이 있다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해소하신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가맹금 미지급, 물품 대금 미지급 등	가맹계약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VAT 포함)
합 계	18,700
가맹비	7,700
최초 교육비	5,500
인큐베이팅비	5,5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7,700	770	-	-	33㎡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7,700	770	물품수령시	개봉 및 사용 후	33㎡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가맹희망자가 최종 결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귀하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 점포선정 문의처 : 당사 점포개발팀 (031)907-6640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남자 아이'는 다르게 가르쳐야 합니다'라는 가치관에 입각하여 남자아이의 특수성에 기반한 독자적인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개별 강사 채용을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가맹점사업자가 이하의 계약·채용 기준 및 교육 기준을 준수할 것을 가맹계약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아래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가맹계

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특히 강사의 교육 기준 미이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므로 아래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신규교육 과정을 수료할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교육청의 학원설립, 운영등록 및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을것
강사	당사의 강사 교육 과정을 수료할 것	2년제 이상, 또는 2년제 졸업에 준하는 미술 관련 학부, 유아교육 관련 학부를 졸업 또는 수료한 남자
상담실장		결격 사유 없는자
교직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자라다 남아 미술학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방법·공급
업체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가맹점 등 분납 제도

당사는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당사	총 매출액(정규 수업 회원수 x1개월 원비)의 9%	매 익월5일	-	소멸성	후불
광고 분담금	당사	별도 협의	별도 협의	시행 전	시행 이후	29p 참조
판촉 분담금	당사	별도 협의	별도 협의	시행 전	시행 이후	29p 참조
학원관리 프로그램	협력업체 (미정)	협의	매월	-	소멸성	온라인 프로그램 서비스 등
점포환경 개선 비용	자율선택	가맹본부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별도 협의	시행 전	시행 이후	33p 참조
지연이자	당사	연 1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	-	모든 금전 지급기일 경과 시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감독 결과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상품공급 및 영업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당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당사 관계자가 가맹점에 출입·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당사가 감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종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 또는 출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서비스 품질관리	강사 현황, 원생 현황, 회계처리, 각종 설비 관리, 교재, 교구관리, 학원의 위생·청결 관리, 가맹계약 및당사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사항 점검	수시	문의 : 본사 본부팀 (031)907-6640
원생 관리	원생 관리 컨설팅 및 지원	상시 (프로그램 등록)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자라다남아미술학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받아야 하며,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 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7p)에 나와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가맹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당사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
- 상호.간판 등 당사의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 내지 제거
- 당사가 제공한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과 가맹점 운영에 관계된 서류를 당사에 반환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축소된 불완전한 종료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 벌로서 위반 일수 당 300,000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는 직접 영업표지를 제거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존속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가맹기간 중 계약한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의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귀하가 [자라다남아미술학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자라다남아미술학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3 참조]
- ② 귀하가 당사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귀하가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목록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지3] 판매상품리스트 참조	[별지3] 판매상품리스트 참조	제한 없음	-

귀하가 당사의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아동(유아, 초등)미술 교육	자라다 남아 미술학원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동(洞) 당 한 개 가맹점을 원칙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점을 원칙으로 함)

-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의 하자,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임을 확약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는 영업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 [해당 동]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가집니다.
- 가맹본부는 전항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따르는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을”과 **합의하여 영업지역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영업 지역이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 사내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상권 (이하"특수상권"이라 함)은 제외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특수상권"내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상권"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으로 한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 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절차	합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합의 여부 회신 * 합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사는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자라다남아미술학원] 영업표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자라다남아미술학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86.8%	13.2%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자라다남아미술학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8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교육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자라다남아미술학원]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 · 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교재 공급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인 아동미술학원을 창업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장 내에서 남아 미술교육과 무관한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와 동종 또는 유사한 표지를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등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절차

일반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을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본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 7조 8항을 위반하여 당사의 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가맹점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타사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14조 제6항을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28조 제7항, 제8항을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32조(매니지먼트 및 온라인 프로그램 이용)제1항,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일체의 콘텐츠 복제, 위·변조)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하지 아니 한 상품을 원생에게 판매·제공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타 학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된 가맹학원에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본부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자료, 교육과 세미나 자료,편량의 내용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사업자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가맹본부와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허위로 보고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매뉴얼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휴원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제33조(상품의 공급중단)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학원을 양도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학원을 임대하거나 대리 경영하게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원생, 학부모, 기타 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로 원생, 학부모, 제3자와 분쟁의 원인이되는 사실에 대하여 가맹본부가(제1회)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품질관리 기준을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여자아이를 원생으로 받거나 6-13세가 아닌 남자아이를 원생으로 받는 경우(단, 5세의 경우 2학기부터 성향에 따라 등록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교육 미이수 또는 자격 갱신을 하지 않은 강사를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제36조 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3) 즉시해지 사유 및 절차

위의 일반해지와 달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수정사유		관련 계약 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의 경우		제49조 제1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제49조 제1항, 제2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도인에게 가맹계약 위반 사유가 없을 것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품질관리 기준을 비롯한 <u>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u> ○ 양수인이 신규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당사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본사 본부팀 (031)907-6640

만일 귀하가 당사의 양도 승인 없이 양도를 할 경우, 당해 양수도계약은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이를 이유로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계약 잔여기간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양도인은 잔존 계약기간에 따른 가맹금을 소멸되고, **양수인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에 최초 교육비, 그 밖에 영업개시 전의 기타 비용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양수인이 위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양도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신규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습니다(가맹비, 교육비, 기타 초기 소요 비용 납부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와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신청→당사 검토(상속인면담 포함, 30일가량 소요)→ 동의 여부 통지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수료 및 최초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능	-	-	-
업무위탁	불가능	-	-	-

가맹점운영권 관련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관련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 영업 중에는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행정구역상 동일한 시]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자라다남아미술학원]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만 6~13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교육을 지도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위반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당사에 대하여 예치대상 가맹금 상당의 위약벌을 부담함.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자라다남아미술학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관계법령 및 해당 지역의 교육청이 정한 조례, 지침을 준수할 것을 원칙으로 함)	법정공휴일 제외 주5일 영업 *휴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함	(문의) 본사 본부팀 (031)907-664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4명	직접 근무	강사의 경우,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4) 당사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필요 시 관리 · 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서비스 품질 관리 강사 현황 원생 현황 회계처리 현황 각종 설비 관리현황 교재·교구관리 현황 위생·청결 현황	담당자 학원 방문 → 당사의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서비스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본사 본부팀	(문의) 본사 본부팀 (031)907-6640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자라다남아미술학원]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나누어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지역광고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당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상품광고	별도 협의		광고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 대중매체 광고 (전국 행사) -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시행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	-
	가맹점 개별광고	없음	100%		
개별 행사	기타 지역광고의 경우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임의 시행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의 판촉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
판촉 행사	공동판촉 활동	별도 협의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시행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40조)

- (1) "을"이 제25조(영업비밀 준수)제3항 또는 제26조(경업금지 의무)제2항, 제30조(매뉴얼)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과거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의 평균 수강료 매출액(18만원) x 3개월 x 3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2) "을"이 제7조(영업지역)제 8항에 해당하여 영업지역이 침해된 타 가맹학원에게 원생 1인당 1회 교육비(45,000원) x 발생기간(개월)을 계산하여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3) "을"이 제7조(영업지역)제8항 또는 제36조(계약의 일반해지)제4항, 제37조(계약의 즉시해지)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과거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의 평균 수강료 매출액 x 3개월 x 3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4) 계약종료 이후 "갑"의 영업표지를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 종료일의 익일부터 1일당 금 삼십만 원(₩300,000)씩 계산하여 계약종료 후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5)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6) "갑"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55~65일 내외	[12p~17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3~55	
일일연수 신청	- 일일연수 신청	D-52	
2차연수	- 2차연수 후 적합성 평가	D-51	
사업 설명·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50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35	
가맹금 예치	-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D-30	
초도물품비 지급	- 초도물품비 지급	D-30	-
원장님 및 최초 교사진 남아미술교육전문가 교육과정 및 평가 / 자격증 발급	- 남아미술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교육과정 및 평가 및 자라다 핵심 노하우 전수 (4주)	D-30(28일)	-
점포실측/설계		D-30(7일)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2(1일)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1(20일)	-
인허가 취득	- 영업개시일 3일 전까지 취득하여야 함	D-7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원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당사에 소속 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당사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당사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사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당사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당사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당사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당사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당사 부담	(문의) 본사 본부팀 (031)907-664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당사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당사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자라다남아미술학원]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행정 지원 (2차례)	안정적인 데스크 업무 및 학부모 응대	신규 오픈원	샘플수업 오픈일	본사본부팀	-	
	정규수업 원활화, 체계화		정규수업 오픈일	인력지원		
운영 지원 (3차례)	샘플유입량 및 등록률 체크		오픈 후 3개월	운영 컨설팅 제공		
	원 운영 진단(내.외부환경)		오픈 후 6개월			
	1년간 운영된 운영내용 체크		오픈 후 1년			
교육 지원 (8차례)	샘플 시범 수업 및 진행		샘플오픈 전 주간	직원원 참관		본사교육팀 인력지원
	수업관련 프로그램 사용 및 수업계획서 작성 안내		정규 수업 시작 1주 내			
	수업 내용 체크(정규 및 샘플)		정규 오픈 후 1개월			
	수업관리 및 학회 진행 교육		오픈 후 2개월			
	성향파악 수업 진행 체크		오픈 후 3개월			
	정규 수업 진행 사항 체크		오픈 후 6개월			
	정규 수업 진행 사항 체크		오픈 후 9개월			
	정규 수업 진행 사항 체크		오픈 후 12개월			

◆ 경영지원 내역 중 교육지원 내용은 원운영 및 교사 수업 운영 사항에 따라 원마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자라다남아미술학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은 당사가 정한 곳에서 개업 전에 소집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일일연수	남아미술교육의 특성 소개 및 적합성 평가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전	필수 교육
이차연수	2차 적합성 평가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전	필수 교육
가맹점사업자 신규 교육	상담기법, 성향파악법, 돌발상황 대처법, 서비스교육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학회 교육	남아미술교육 수업교습법 연구, 성향파악 사례 연구 등	실비	월 1회	학회교육은 구역별 학회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본사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특별 교육	재교육, 신규 교육 프로그램 교육, 연구 사례 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수시	필수 교육인 경우 사전에 별도 통지
강사 교육	신규 강사 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신규 강사 채용시마다	필수 교육
최민준 대표 특별 교육	남아미술교육 심화 과정	집단 강의	신규교사 입사 후 1년 이내	필수 교육

◆ 상기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자라다남아미술학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노하우전수 (가맹점사업자)	1개월	5,500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일일연수	1일	100	계약 체결 전
이차연수	1일	300	계약 체결 전
신입 교사교육	4주	면제	수시

학회 교육	별도계획	면제	년 2회 이상
강사교육	협의	협의	-
최민준 대표 특별교육 (전 가맹원 원장,교사,직원)	수시	면제	년 1회 미만 1회 수료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당사와 가맹계약을 맺는 가맹점사업자 본인 및 가맹점사업자가 원생 교육을 위하여 채용한 강사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개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교육 미이수 강사를 현장에 투입 하는경우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정기 교육 및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점 운영권을 제한받거나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일산본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3층 비-310-1호
2	경기	부천상동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11 부건프라자 6층
3	경기	분당정자원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 8-3 월드프라자 201호
4	서울	강동명일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56(명일동 46-1) 명성프라자 8층 804호

2. 바로 전 사업연도각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5년 11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776,590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확인서상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본사 본부팀 (031)907-664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 지 ◆

① 원부재료 리스트	별지-1
② 필수설비/집기 리스트	별지-2
③ 판매상품 리스트	별지-3
④ 재무상황	별지-4
⑤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별지-5
⑥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별지-6-1
⑦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별지-6-2

[별지 1] 원부재료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2] 필수설비/집기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3] 판매상품 리스트

상품,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권장가격 (단위 : 원)	가격 통보 방법	위반시 책임	비고
교습비	1회성 샘플수업	50,000	학원법에 근거하여 개별신고 후 가맹점내 게시	가맹점 관할 교육지원청 조례에 따름	가맹점의 판단에 따라 교습비 구성 및 금액 책정 가능
교습비	1개월 정규수업	220,000			
교습비	3개월 정규수업	660,000			

[별지4]최근 3년간 재무상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5]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구분	점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비고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자라다남아미술학원]의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가맹희망자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수령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수령장소 :

* 가맹본부 : (주)자라다교육 (인)

[별지 6-2]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자라다남아미술학원]의 정보공개서를 제공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가맹본부 : (주)자라다교육 (인)

제공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제공장소 :

* 가맹희망자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